

한약정보연구회지 투고규정

2013.08.09. 제정
2013.09.11. 개정
2015.10.10. 개정
2018.01.01. 개정
2019.04.20. 개정
2019.11.23. 개정

1. 일반원칙

1-1. 투고자격

투고자의 자격은 관련 분야 전공자로 한다. 본 회지에 투고할 수 있는 원고는 한약(한약재 및 한약제제)과 관련된 정보로서, 신규성이 있거나 최소한 기존 정보를 전혀 다른 형식으로 재가공한 것이며, 학술적·산업적 이용가치가 있고, 다른 학술지에 인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다른 학술지, 도서, 웹사이트 등에 이미 게재된 사실이 없으며(단, 학술대회 구두·포스터 발표는 예외), 연구윤리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1-2. 원고게재여부 및 게재순서

원고는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받은 후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채택된 원고의 게재순서는 최종원고의 접수 순으로 한다.

1-3. 중복게재 및 무단게재

이미 다른 학술지 및 기타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같은 언어로 된 같은 내용의 원고는 투고할 수 없으며, 본지에 게재된 원고를 임의로 타지에 전제할 수 없다.

1-4. 심사료 및 게재료

청탁 원고를 제외한 모든 원고의 투고자는 소정의 심사료, 게재료 및 원고 특성에 따른 추가경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5. 편집위원회의 역할

편집위원회는 원고의 체제, 분량 등에 대하여 저자에게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원고의 내용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와 체제 등을 수정할 수 있다. 제출된 모든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1-6. 저작권 등

본 회지에 게재된 원고에 대한 저작권은 각 저자에게 있으나, 공중송신권·전송권·복제권·배포권은 본 연구회와 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출판권은 본 연구회가 소유한다. 투고자는 이에 대해 동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본 회지에 투고할 수 없다. 본 회지의 확산을 위해 공중송신권·전송권·복제권·



배포권을 학술자료 제공 전문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2. 학술지 발간 및 원고 접수

본지는 연 2회(6월 15일, 12월 15일) 발간이나, 정규 발간일 전이라도 온라인 발간은 수시로 하며, 원고 접수는 연중 수시로 한다. 원고 접수처는 편집위원회에서 공지하는 전자우편 또는 웹사이트 주소로 한다. 원고의 접수일은 원고가 접수처에 도착된 날짜로, 원고의 수정일은 수정 원고가 접수처에 도착한 날짜로, 원고의 채택일은 최종 원고가 편집위원회에 의하여 게재 확정된 날짜로 한다.

3. 원고 작성 요령

원고는 심사용 원고와 최종 원고로 나눈다. 모든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지정한 기본서식 파일에 작성한다. 제출된 원고가 지정된 서식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출은 파일로 하되, 파일에 암호설정 및 편집제한 등 별도의 보안조치는 하지 않는다.

3-1. 심사용 원고

심사용 원고는 처음 투고할 때 제출하는 원고로서, 저자의 성명, 소속 및 사사(감사의 글)를 삭제한 파일을 제출한다. 인적사항 등이 삭제되지 않았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삭제한 뒤 심사 의뢰할 수 있다.

3-2. 최종 원고

게재 확정이 통보된 뒤 저자의 성명, 소속 및 사사가 기재된 최종 원고를 제출한다.

4. 원고의 종류와 분량

4-1. 종류

원고의 종류는 원저(original article), 종설(review), 기술보고(technical report), 증례보고(case report)로 구분하며, 투고할 때에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밝혀야 한다.

1. 원저는 새로운 진리의 발견, 새로운 현상의 관찰, 새로운 연구방법의 개발 등을 제시한다.
2. 종설은 특정 주제에 대한 현황, 추세, 최신 연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체계적 고찰(systematic review)과 소고(mini review)를 포함한다.
3. 기술보고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사실의 보고, 여러 자료의 비교 분석 등을 포함한다.
4. 증례보고는 특정 환자의 치료에 관한 식견, 특이한 질환, 새로운 검사법이나 치료법 사용에 관한 보고 등을 포함한다.

4-2. 분량

원고의 분량은 무제한으로 한다.



5. 원고의 양식

원고의 순서는 제목(title), 초록(abstract) 및 주제어(keywords)가 포함된 표제지(title page), 서론(introduction), 본론(discussion), 결론(conclusion)으로 구분된 본문(texts), 감사의 글(acknowledgements), 참고문헌(references)의 순으로 한다.

5-1. 제목

국문 및 영문으로 작성하고, 국문 제목이 25글자를 초과할 경우, 24글자 이내의 단축제목을 작성한다.

5-2. 저자

저자로서 원고에 기재된 사람은 연구윤리규정에 따른 저자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 저자가 복수일 경우, 제1저자는 연구에 있어서 가장 공헌을 많이 한 자로서 저자 중에서 처음에 기재하고, 다른 저자는 기여 정도에 따라 순서대로 나열한다. 교신저자는 원고의 내용 등에 관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교신할 수 있는 저자로서 마지막에 기재한다. 저자에 대한 정보는 원고에 기재하지 않고, 투고 시스템에 별도로 등록한다.

5-3. 초록

원저와 종설의 경우 250단어, 기술보고와 증례보고의 경우 150단어 이내의 영문으로 작성하며, 연구 목적, 연구 방법, 결과 및 결론 등이 포함되도록 한 문단으로 구성한다. 단, 실험 논문의 경우 목적(Purpose), 재료 및 방법(Materials and Methods), 결과(Results), 결론(Conclusion)의 항목으로 나누어 작성할 수 있다.

5-4 주제어

초록 아래에 6개 이내의 영문 주제어(중심단어, keywords)를 중요도 순으로 나열한다. 주제어가 한약 명일 때에는 국어발음을 우선으로 하고, 중국어발음(한어병음) 및 라틴 생약명을 병기한다.

5-5. 서론

연구의 목적과 그에 대한 간략한 배경을 언급한다.

5-6. 본론

본론에서는 재료 및 방법, 결과, 고찰 등을 필요에 따라 서술하며, 다음의 원칙을 준수한다.

1. 용어 : 되도록 국문으로 쓰고 필요시 영문 또는 한문을 병기하며, 번역이 곤란한 용어는 영문 또는 한문 등 원문으로 쓸 수 있다.
2. 약자 : 약어는 표준 약어만 사용한다. 논문제목과 초록에는 약어 사용을 피한다. 본문에 약어를 처음 사용할 때에는 정식 명칭을 먼저 쓰고 괄호 등을 이용하여 약어를 표기하며 이후에는 약어만으로 표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약자는 가급적 사용을 피한다.
3. 고유명사, 숫자 및 측정치의 표기 : 인명, 지명, 그 밖의 고유명사는 가급적 원어를,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 도량형 등 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온도는 섭씨로, 혈압은 mmHg로 기록한다.
4. 학명 : 명명규약에 따른 정명을 사용하되, 널리 사용되는 이명은 병기할 수 있다. 속명과 종소명은

- 이탤릭체로 하며, 명명자는 식물명의 경우 표준 약칭으로, 동물명의 경우 원명 그대로 기재한다.
5. 생약명 : 공정서 또는 그에 준하는 문헌에 의거하여 라틴어 생약명을 사용하되, 때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기하며, 약용부위는 마지막에 표시한다. 필요시 한자명, 영문 생약명, 중문 약명의 한어 병음을 병기할 수 있다.
 6. 국내에 분포하는 생물명과 한약명이 동일할 경우 생물명은 한글로, 한약명은 한문으로 표기한다.
 7. 처방명은 한국어 발음을 우선으로 표기하며 중국어 발음을 병기하고 첫 글자만 대문자로 한다. 그리고 湯, 散, 丸 같은 제형(劑型)을 뜻하는 단어는 hyphen(-)을 사용한 뒤 소문자로 표시한다.
 8. 항목 체계 : 아라비아 숫자로 구분하되, 1. 1) (1) ① 순서로 한다.

5-7. 그림·표

1. 표는 본문에 인용한 순서대로 번호를 쓰고 간단한 제목을 붙이며 항목에 대한 설명은 각주에 넣고 표제에는 넣지 않는다.
2. 표에 사용한 비표준 약어는 모두 각주에서 설명한다. 각주에는 기호를 써서 설명하며 기호는 다음 순서로 사용한다 : *, †, ‡, §, ||, ¶, **, ++, ††...
3. 그림은 본문에 인용한 순서대로 번호를 쓰고 구체적인 설명을 붙인다.
4. 표와 그림은 필요에 따라 본문 중에 삽입하거나, 마지막 쪽에 삽입하거나, 별도의 파일로 제출할 수 있다.

5-8. 결론

연구 내용 및 가설 검증 등 논의를 요약 정리한다.

5-9. 참고문헌

참고문헌은 본문에서 인용한 순서대로 일련번호를 매겨 정리하고, 본문에는 인용문구의 끝에 어깨번호 형태의 아라비아 숫자로 반 괄호 안에 넣어 표시하되 말미의 참고문헌 일련번호와 일치하게 하여 기재한다. 참고문헌이 공저인 경우에는 가급적 모든 저자를 명기하되, 저자수가 5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제1저자 외 1인 또는 et al.로 표기할 수 있다. 저자명은 원명 그대로 표기한다.

참고문헌의 양식은 다음과 같이 하며,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1. 학술지(연속간행물) 논문 : 저자명. 제목. 잡지명. 출판년도;권(호):시작면-종료면.
2. 단행본(일반서적) : 저자명. 도서명. 판수. 발행지:출판사. 출판년도:면수.
3. 고문헌(단행본) : 저자명. 문헌명. 시대, 연도. 단행본명. 발행지:출판사. 출판년도:면수.
4. 고문헌(총서류) : 저자명. 문헌명. 시대, 연도. 총서명. 발행지:출판사. 출판년도;권:면수.
5. 전자매체 :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The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Version 2016-3. Published on the Internet; <http://www.iucnredlist.org> (accessed 2019-04-20).

6. 원고 투고 방법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지정한 투고 시스템을 통해 투고한다. 투고 시스템 이용을 위해서는 사전에



편집위원회로부터 사용자 아이디를 발급받아야 한다. 투고 시스템에 기본정보, 저자, 원고 파일을 등록하고, 저작권 동의, 투고규정 및 연구윤리규정 준수 자가점검표, 논문 유사도 검사 결과 파일을 등록해야 원고가 접수된다. 논문 유사도 검사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하는 KCI 논문 유사도 검사 시스템 (<https://check.kci.go.kr/>) 또는 그 이상 수준의 시스템을 이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임원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개정 규정은 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13.09.11 개정)

부칙

본 개정 규정은 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15.10.10 개정)

부칙

본 개정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19.04.20. 개정)

부칙

본 개정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2019.11.23 개정)

한약정보연구회지 연구윤리규정

2013.08.09. 제정

2018.07.07. 개정

2019.04.20. 개정

2019.11.23. 개정

제1장 목적

본 규정은 한약정보연구회 회원과 회지 투고자, 심사자 및 편집자에게 연구와 논문의 작성, 심사 및 편집을 윤리적인 절차에 따라 수행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연구 분야의 윤리 및 진실성을 확보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장 연구 관련 윤리규정

제1절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조 인용 및 참고 표시

1.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내용이 아닌 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또한 개인적으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2.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를 통해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선행연구의 결과부분과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과 주장을 독자가 알 수 있도록 분리하여 명기하여야 한다.

제2조 원고의 수정

저자는 원고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원고에 반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3조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행위 금지

1. 저자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서는 안된다. 이는 위조에 해당한다.
2. 저자는 연구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이는 변조에 해당한다.
3. 저자는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및 결과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여선 안된다. 이는 표절에 해당한다.
4. 저자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여서는 안된다. 이는 부당한 저자 표시 행위에



해당한다.

제4조 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의 금지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해서는 안된다. 이미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 생명윤리 준수

저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인간대상 연구 등을 수행했을 경우,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필했음을 명시해야 한다.

제2절 편집위원회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조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원고를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원고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2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원고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원고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3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원고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원고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3절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조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원고를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원고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책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2조 심사위원은 원고를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에 의지하지 않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원고를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원고를 탈락시켜서는 안되며, 심사 대상 원고를 심도있게 숙독하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제3조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원고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제4조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원고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원고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고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원고 내용을 다른 사람과 논의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원고가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없이 원고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3장 윤리규정 시행 지침

제1조 윤리규정 서약

본 회의 회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하며, 연구와 지적 활동의 책임자는 참여자들이 본 윤리규정을 성실히 실천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공인기관의 연구윤리 교육을 수료하고 그 증빙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윤리규정 준수 서약을 대신할 수 있다.

제2조 윤리규정 위반 보고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본 회 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는 문제를 본 회에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3조 윤리위원회 구성

윤리위원회는 회장 산하에 두며, 위원은 당연직으로 학술이사와 편집이사를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하고 회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최연장자가 수임한다. 윤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 윤리위원회의 권한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5조 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1. 윤리규정 위반이 제보된 경우, 윤리위원회는 제보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예비조사에서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본 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할 수 있다. 예비조사에서 본 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제보자에게 20일 이내에 통보한다(익명제보 제외).
2. 본 조사는 예비조사 착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하며, 종료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조사 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3. 피조사자는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4.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또는 본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윤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가 타당할 경우 재조사를 실시한다.
5. 예비조사 및 본 조사의 결과는 제보의 내용,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조사위원 명단(본 조사에 한함),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 근거(예비조사에 한함), 피조사자의 연구부정행위 사실 여부(본 조사에 한함), 관련 증거 및 증인(본 조사에 한함),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본 조사에 한함)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로 작성하여 조사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에 제출한다.
6.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물은 5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결과보고서는 이사회 보고 이후 공개할 수 있다(단, 결과보고서 중 증인, 참고인, 자문위원 등의 인적사항은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다).
7. 제보일로부터 5년 이전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처리하지 않는다.

제6조 소명 기회의 보장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 조사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본 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회는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8조 후속조치의 절차 및 내용

1.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2.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회원 자격 정지 내지는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 조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3. 윤리규정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경우 6개월, 회원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1년, 회원 자격 박탈 징계를 받은 경우 3년 간 회지 투고 및 원고 심사를 할 수 없다. 단, 제4호에 해당하는 저자는 판정일로부터 3년 간 회지에 투고할 수 없다.
4.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은 편집위원회 직권으로 게재 철회(retraction) 후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등재제도 관리지침에 따라 조치한다.
5. 고의성이 없고, 이해당사자들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연구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안일 때에는 편집위원회 명의로 정오표(erratum)를 게재한다.

제9조 윤리규정의 수정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회 규정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이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개정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18.07.07 개정)



부칙

본 개정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19.04.20. 개정)

부칙

본 개정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9.11.23 개정)



Korean Herbal Medicine Informatics Vol. 7. No. 2

published by the Society of Korean Herbal Medicine Information

- **Aims and Scope** *Korean Herbal Medicine Informatics (KHMI)* is a double-blind peer-reviewed open access journal published two times per year and focused on scientific research or related information for herbal medicines (originated from organisms or minerals) as well as agriculture, forestry, biotechnology, biology, informatics, and industrial research. The adequate information will be novel or at least a different type of rework existing knowledge and shall value the academic or industrial use. Also, the data can be cited in other journals that have published. The kind of articles in *KHMI* includes original article, review, technical report and case report.
It launched from September 2013, and its abbreviated title is *Korean Herb. Med. Inf.*
- **Editorial Board** Editor-in-Chief Dr. Choi Goya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Editors Dr. Kim Youngsik (Kyung Hee Univ.)
Prof. Kim Junghoon (Pusan Nat. Univ.)
Prof. Roh Seong-Soo (Daegu Haany Univ.)
Prof. Lee Kyungjin (Kyung Hee Univ.)
Prof. Lee Jung-hyun (Chonnam Nat. Univ.)
Dr. Lee Ju Sang (Jeju Institute of Korean Medicine)
Prof. Jerng Uimin (Sangji Univ.)
- **Editorial Office** Herbal Medicine Resources Research Center,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111, Geonjae-ro, Naju-si, Jeollanam-do, 58245, Republic of Korea
(e-mail: editor@khmi.or.kr website: http://khmi.or.kr)

KCI등재후보 정기간행학술지[2013.09.30. 창간, 연 2회(6.15, 12.15.) 발간]
한약정보연구회지(韓藥情報研究會誌) 제7권 제2호

ISSN 2288-5161 (Print) / ISSN 2288-5293 (Online)

발행일 | 2019.12.15. Published on December 15, 2019

발행인 | 이금산 Publisher: Lee Guem-san

편집인 | 최고야 Editor: Choi Goya

발행처 |  한약정보연구회 (http://khmi.or.kr)

주소 전북 완주군 삼례읍 상서만경길 37

전화 063)850-6985, 042)868-9348

